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성산)

# 노회찬 보도자료

T 02-784-9130 F 02-788-0357 E omychans@naver.com

담당자 박창규 보좌관  
010-9029-1895

<2018. 5. 2.(수)>

## 노회찬 의원,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하 가능성 열렸다”

- “2016년 총선때 타 지역보다 비싼 경남 도시가스요금 최초 문제제기, 꾸준한 활동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이끌어내”
- “부풀려진 투자비용, 법인세비용 바로잡아 원가인하→요금인하 유도”
- “미공급지역 투자 전제로 투자보수를 추가하도록 해 자의적인 투자보수를 가산 통한 소매요금 인상 제한”
- “소매요금 원가산정 정보 공개하고, 소비자의 정보청구권 보장키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총선 당시 서울보다 비싼 경남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최초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꾸준한 정책연구 활동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개선을 이끌어냈다. 이제 경남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도시가스 요금 추가인하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저는 지난 2016년 총선때 서울보다 비싼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에 다시 들어가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

다”며

“2016년 6월 이후 저는 경상남도에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촉구해 2016년과 2017년 도시가스 요금인하 공약을 실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2016년 6월부터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불합리한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준’과 ‘비민주적인 제도변경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마련해 세계 보고했다”고 밝히고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은 노회찬 의원이 2016년 6월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한 결과와 2017년 들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정책연구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마련된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용을 일부 반영해 마련되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추진계획은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첫째, 산업부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소매요금) 결정요인인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사후정산을 실시해 다음해 공급비용 산정시 정산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총괄원가 항목인 배관투자비 등의 ‘예상금액’을 원가에 반영했으나 ‘실제 투자비 금액’이 ‘예상금액’에 미치지 못해 원가가 부풀려진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가 2016년 6월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한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 2017년 7월 6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되었다.

당시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

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2,588억여원 상당 적게 투자되었는데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12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수요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요금 계 172억 1,800만여원 상당액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남지역도 약 374억원이 요금산정 당시에 비해 적게 투자되었는데 정산되지 않아 약 24억 8천만원의 요금을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사후 정산이 제대로 실시되어 소비자들의 이러한 추가부담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둘째, 도시가스 공급비용 총괄원가 항목인 법인세비용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의 구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의 구간세율 : (종전)세전 당기순이익 210억원×최대 한계세율 24.2%  
→(개선)세전 당기순이익 (2억원×11%)+(198억원×22%)+(10억원×24.2%)

종전에는 세전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비용을 산정해 실제 납부한 법인세에 비해 법인세비용이 과다하게 원가에 반영되어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가져왔다.

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해 정책연구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경남에너지가 2016년도에만 법인세 비용 약 6억1천만원을 원가에 과다 계상했음을 밝혀내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셋째, 도시가스회사의 이윤율인 ‘투자보수율’에 가산율을 부과할 때 투자보수 가산금액의 1.5배를 미공급지역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도시가스 전국평균보급률 미만 지역이나 전국평균보급률 상회 지역이라도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가스회사의 수익율인 투자보수율에 2~3%의 가산 투자보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증가된 ‘이윤의 상당액’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투자하도록 했다.

저는 이 규정과 관련해서도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경남에너지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이 투자보수율 규정 때문에 총 공급비용이 약 24억원 증가되어 소매요금 인상에 반영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이 투자보수율 규정 관련 ▲타인자본 보수율에도 가산 투자보수율을 적용하도록 한 점 ▲‘미공급 지역에 상당액 투자’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번의 투자보수율 규정 개정은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3% 이내에서 투자보수율을 추가 적용하도록 하되, 이렇게 적용받은 투자보수(수익)의 1.5배를 전액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렇게 투자보수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가산 투자보수율’ 적용의 오용을 막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넷째,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원가산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원가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요금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도민들이 검증할 수 없었다.

단적으로 2016년 4월 산업부 지침인 「소매요금 산정기준」 과 요금산정 실무편람 내용

이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소비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요금인상 부담을 졌다.

이렇게 불투명한 요금인상 절차에 대해서도 2016년 6월 이후 산업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정책건의를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도 보다 투명하게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또 사후에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다섯째 시·도가 수의계약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검증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동일 기관이 3년 연속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검증기관간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에는 소비자 이익보호 차원에서 ▲수요가 시설분담금 산정 ▲요금체납 ▲계량기 교체비용 환급 ▲연체료 ▲정보공개 관련 각 시·도의 공급규정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제도의 개선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4월에 도시가스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보수율’(수익율) 계산 방식을 도시가스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변경해 주었는데, 이러한 변경은 결국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남았다”며

“현재 이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시 소비자 요금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소비자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끝>

##별첨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계획>(2018. 4)

#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추진 계획

## □ 추진 배경

-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시·도의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산업부의 역할 요구 증대

< 산업부 종합감사 시 감사원 지적사항('17.7월) >

- ◆ (지적사항) 일부 시·도가 공급비용 산정 시 배관투자비에 대해 실적치 대비 사후 정산을 미 실시하여 요금이 과다 계상('13~'15년, 172억원)
- ◆ (처분요구) 산업부는 향후 각 시·도가 배관투자비를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등의 제도개선 요구

⇒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시·도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

## □ 주요 내용

### 가. 공급비용 산정 합리화 ⇒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사항

- ① 공급비용 결정 요인(총괄원가, 판매량)에 대한 사후 정산 실시

- 공급비용은 당년에 발생될 총괄원가와 판매량을 예상하여 산정 후 요금으로 회수함에 따라 실적과 차이가 발생 → 합리성 부족

구분(예시 : A사, '16년)	현행(예상치 반영)	실제 발생	비고
① 총괄원가(백만원)	59,984	59,984	현재는 0.06원의 인하요인에 대한 정산 미 실시
② 판매열량(백만MJ)	27,031	27,806	
③ 공급비용(①÷②)	2.2191(원/MJ)	2.1572(원/MJ)	

※ 천연가스(도매 공급비용)와 전기 요금의 경우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 예상 총괄원가의 주요 항목(①배관투자비, ②인건비, ③고객센터수수료)과 ④ 판매열량에 대해 차년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 실시

구분		현행	개선 방향
예상 총괄 원가	① 배관투자비*	일부 시·도만 실시(감사원 지적)	차년 공급비용 산정 시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실제 발생 실적(비용)을 기준으로 <b>정산 실시</b> ±1.5% 초과시 정산
	② 인건비	정산 미실시	
	③ 고객센터수수료	정산 미실시	
	④ 예상 판매량	±3% 초과시 정산	

※ 감사원이 지적한 일부 시·도의 배관투자비 **과다 계상 금액**(‘13~’15년, 172억 원)에 대해 해당 시·도별 ‘18년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 추진

\* 각 시·도별 同 기간 공급비용 승인 시 삭감한 총괄원가를 고려하여 정산 실시

② 공급비용의 법인세 산정 시 법인세법상의 **구간세율\***을 적용토록 개선

\* 구간세율 : 2억원 이하(1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2%), 200억원 초과(24.2%)

○ 현재는 법인세를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공급비용에 법인세가 과다 반영되고 있음**

< 법인세 산정 적용 방식 비교 >

구분	현행	개선 방향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보수 전체에 최대 <b>한계세율 적용</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보수의 <b>구간별 해당 세율 적용</b></li> </ul>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보수가 100억원일 경우, 100억원 × 22% = <u>22억원</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보수 100억원일 경우, ① 2억원 × 11% = 0.22억원 ② 98억원 × 22% = 21.56억원 합계(①+②) : <u>21.78억원</u></li> </ul>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보수가 100억원을 가정 시, 약 2.2천만원의 공급비용 감소효과</li> </ul>	

③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민간 도시가스사의 투자 확대가 가능토록 투자보수 가산 제도의 운영을 강화

< 투자보수 가산 제도 운영 비교 >

구분	현행	개선 방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 대상 구간, 실적 관리 불명확 등</li> <li>인정받은 투자보수 가산 금액의 상당 부분만 투자토록 의무화(기준 모호)</li> <li>실적에 대한 패널티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별 투자보수 가산 금액에 대한 <b>투자구간, 계획 및 실적을 명확하게 관리</b></li> <li>투자보수 가산 금액의 <b>1.5배를 미공급 지역에 투자토록 의무화</b></li> <li>계획 미달성 시 <b>패널티</b>(가산된 투자보수 환수 조치 등) 부과</li> </ul>



④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원가산정 정보 공개 및 소비자의 요금 관련 정보 공개 청구권 관련 조항 신설

- 현행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국민 신뢰성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도매공급비용의 경우 별도 조항 有)

\* 공개 내역(안) : 원가검증 용역보고서, 항목별 원가정보 일체, 최종 승인 요금 등

⑤ 시·도별 공급비용 원가검증 용역기관의 독립성 강화

- 일부 시·도는 수의계약에 따라 1개 기관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용역기관의 객관성·투명성 저해 우려

⇒ 수의계약에 따른 용역기관 선정 시 동일 기관의 3년 연속 수행을 제한(신설)하여 검증 기관간 상호견제 및 독립성 강화

**나. 공급 관련 제도 개선 ⇒ 시·도 공급규정 개정사항**

※ 관련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6항

- 시·도별로 달리 운영되고 도시가스 공급 관련 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소비자 이익 보호 증진

<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구분	현행(사례)	개선 방향
①수요가시설분담금 산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 신청에 동의한 수만으로 수요가시설분담금 산정 시 이후 신청자의 무임승차 문제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 신청자는 잠재(신청&amp;미신청)신청 가능 세대수로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산정</li> </ul>
②요금 체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사용자의 요금 체납금으로 인해 後 신청자의 공급요청 시 공급이 제한되는 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신청자의 공급계약 체결 시 체납금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 보완</li> </ul>
③계량기 교체 비용 환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기 교체비용 선납 후 사용중 계약 해지, 등급 변경 시 교체비용 환급에 대한 규정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검정 기간 도래전 계약 해지 시 교체비용 선납 금액에 대한 환급 의무를 규정</li> </ul>
④연체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로 연 2~5회 부과</li> <li>▪ 과금 오류 시 환급 이자율 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2회로 한정</li> <li>▪ 과금 오류 시 환급 이자율 5% (참고 : 전기 5%)</li> </ul>
⑤정보 공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정보 공개 청구 관련 규정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정보 공개 청구 관련 규정 명문화</li> </ul>

□ **향후 계획**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 '18.3월
- (시·도) 공급규정 개정 : '18.3~4월
- (시·도) '18년 공급비용 산정 시 적용 : '18.4월~
- (산업부) 개정사항 반영 여부 확인 : '18.하반기